

의안번호	제 19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수소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소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2조)
- 수소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3조)
- 수소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4조)
-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5조)
- 수소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7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수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소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수소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소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수소충전소 및 수소 생산 시설 확충
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4. 수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첨단화 및 수출지원
5.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또는 수소안전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국내외 수소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수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일원화를 위한 조문변경

2. 비용 발생 요인

- 수소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소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나. 추계 결과

- 수소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등 육성 지원 : 1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장 정경화

